

의안 번호	2176	[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]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3. 11. 9.(목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11. 9.(목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12. 4.(월)

### 2. 제안이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운영으로 발생하는 세입과 세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
- 『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』를 제정하기 위함.

### 3. 주요내용

-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(안 제2조 ~ 안 제3조)
-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### 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

### 5. 검토의견

-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세입과 세출의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어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하는 사항으로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로 제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 근거법규

## 「지방자치법」

제141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

## 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